

『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최근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면개정 시행(2009. 5.22.)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,
- 지역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「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」를 「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」로 변경.
-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5년마다 계획 수립
-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(안 제6조 ~ 제7조)
 - 위원 20명 이내(위원장 부시장, 부위원장 정보화부서 실국장)
- 정보화부서 실국장으로 정보화책임관 지정(안 제9조)
- 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, 행정정보의 제공,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,
- 지역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「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」를 「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」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(5년마다) 수립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6조, 제7조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4조 ~ 제16조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, 행정 정보의 제공,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구미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,

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추어 새로운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,

관련 정책을 수립, 시행함으로써 지역 정보화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